

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'06. 10. 4공포, '07. 4. 5시행)되고, 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도로명 변경절차, 고지·고시내용, 건물번호판 규격,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,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선정, 도로명시설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0조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제9조, 제21조

3. 주요골자

- 가. 도로명 변경 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·고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, 제2장)
- 나.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·설치하는 경우 규격 및 제작·설치방법, 건물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, 제3장)
- 다.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, 제4장)
- 라. 도로명의 사용의무 및 자료의 구축, 도로명기본도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, 제5장)
- 마.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,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, 제6장)

- 바.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방법, 계약 체결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, 제7장)
- 사. 도로명주소의 홍보·교육, 생활화를 위한 시책추진 등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, 제8장)
- 아. 새주소위원회의 구성·기능·운영·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, 제9장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지난 2006년 10월4일 부로 공포되고, 2007년 4월 5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 관련 제반 후속조치를 적기에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
- 도로명 주소사업의 근본취지와 활용성과를 널리 홍보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성도모는 물론 보다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됨
- 또한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도로명 변경절차와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지내용, 건물번호판의 제작과 규격,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